

부산고등법원 2020. 2. 5 선고 2019나51102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등]

---

## 재판경과

부산고등법원 2020. 2. 5 선고 2019나51102 판결

부산지방법원 2019. 1. 23 선고 2018가합41446 판결

## 전 문

원고,항소인 1. A

2. B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안로 담당변호사 현성삼

피고,피항소인 주식회사 T

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일환

변론 종결 2019. 12. 18

판결선 고 2020. 2. 5

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. 1. 23. 선고 2018가합41446 판결

## 주 문

1.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##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
주위적청구: 피고는 원고 A에게 700,200,000원, 원고 B에게 129,800,000원 및 위 각금원에 대하여 2017. 10. 18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예비적청구: D과 E 사이에 별지 기재 건축허가에 관하여 2016. 2. 2. 체결된 건축주명의변경약정을 830,000,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
피고는 원고 A에게 700,200,000원, 원고 B에게 129,800,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### 1. 제1심 판결 인용

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은데,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면밀하게 살 펴보더라도, 창원시 G, H, I, J, K 지상 L오피스텔상가 신축공사(이하 '이 사건 신축공사'라 한다)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O 주식회사(이하 'O\*이라 한다)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은 원고들이 O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D, E, Q,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830,000,000원에 이르는 일체의 채권(공사대 금, 부당이득금, 손해배상금 등) 중 원고 A는 700,200,000, 원고 B은 129,800,000원 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, 이 사건 신축공사의 건축주 명의가 피고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하거나,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(주위적 청구 부분),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이 경과 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(예비적 청구 부분)는 취지의 제1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

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저심판결문 10쪽 6째 줄의 "기소 되었으나"를 "기소되어 제1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(창원지방법원 2018 고평96)"로 고치는 것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## 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판결 한다.

재판장 판사      심    담판사    김재형판사    심활섭

별지